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15. . .	
연월일	(제 회)	

공무원징계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황교안 (인사혁신처장)
제출연월일	2015. 9.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288호, 2015. 5. 18. 공포)에서 위임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금품등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규정
- 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
- 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의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를 도입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의 전자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부가금 규정 정비(안 제17조의2)
 - 1) 법에서 위임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금품등의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금품등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2) 다른 법령에 따라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조정·감면사유로 추가
- 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절차 개정(안 제5조)

- 1) 소속기관의 중징계 사건 관할을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업무 증가가 예상됨
- 2)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 1)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2호, 2015.8.11.)에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해촉 근거조항 마련
- 2) 비리 행위를 저지른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성폭력 또는 성희롱 징계절차에 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 도입(안 제7조의2)

- 1)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징계시 성폭력 또는 성희롱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없음
- 2)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에 대하여 성관련 외부 전문가의 참여 절차를 마련하여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

- 1) 수기로 작성·관리 하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을 전자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2)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이 줄어들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기록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9. 9. ~ 10. 19.)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를 “하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3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의2(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징계의결등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인 경우에는 성(性) 관련 외부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신체·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액(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등 이득액"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등 이득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등 이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사 건 명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전문가 의견		

※ 피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제5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7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② -----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	-----			
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	-----			
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			
정한다)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 하되, 중앙행정기관에			
<u>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u>	<u>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u>			
<u>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u>	<u>장은 징계운영의 효율성 등을</u>			
<u>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u>	<u>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u>			
<u>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u>	<u>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u>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u>	<u>할 수 있다.</u>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형행 ②을 분리하여 신설>

③ (생략)

<신설>

③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

<신 설>

제17조의2(징계부가금) <신 설>

히는 경우

제7조의2(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징계의결등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인 경우에는 성(性) 관련 외부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신체·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액(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등 이득액"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등 이득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등 이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

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생략) <u><신 설></u>	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등 처리 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무과	
연 락 처	02-2100-6628